

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

[시행 2024. 6. 28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38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8, 8831

I.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

II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4-38호,2024.6.28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